

든든한
사장님의 첫번째 보험
자영업자 고용보험!

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주요내용

제도 도입 배경

-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생산성 향상, 재취업 지원을 위해
고용보험제도 도입 (시행일 : 2012. 1. 22)

가입 안내

- 임의가입 (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누구나 가입 가능)
-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- 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,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
※ 법인의 대표자(대표이사)도 가입 가능
 - ☑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
 - ☑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
※ 2012년 1월 22일 이전 사업 개시 자영업자는 2012년 7월 21일까지 가입 가능
 - ☑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

기준보수 및 보험료

-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5개 '기준보수'를
고용노동부에서 고시 → 가입자는 1등급 ~ 5등급 구간에서 선택 가능
- 고용보험료를 : 2.25% (실업급여 2%, 고용안정 · 직능사업 0.25%)
- 등급별 월별 보험료

- 보험료 : 선택한 기준보수 × 보험료율
-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

(단위 : 원)

등 급	기 준 보 수	월 보험료(2.25%)
1등급	1,540,000	34,650
2등급	1,730,000	38,920
3등급	1,920,000	43,200
4등급	2,110,000	47,470
5등급	2,310,000	51,970

실업급여



1. 수급요건

●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- ☒ 본인 명의로 가입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
- ☒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,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
- ☒ 적자지속, 매출액 감소, 건강악화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그만둔 경우 수급자격 인정

※ 실업급여 수급제한 연령인 만 65세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(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)

2. 지급일수 및 수급액

● 자영업자로 보험에 가입한 기간(피보험기간)에 따라 90~180일

구분	가입 기간(피보험기간)			
소정급여일수	1년 이상 ~ 3년 미만	3년 이상 ~ 5년 미만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년 이상
	90일	120일	150일	180일

● 등급별 월별 실업급여 수급액

- 본인이 선택한 '기준보수'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

(단위 : 원)

등급	기준보수	월 실업급여
1등급	1,540,000	770,000
2등급	1,730,000	865,000
3등급	1,920,000	960,000
4등급	2,110,000	1,055,000
5등급	2,310,000	1,155,000

〈예시〉

3등급을 선택하여 1년간 보험에 가입한 후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

- 납입보험료는 518,400원(43,200원 × 12개월), 실업급여는 2,880,000원(960,000원 × 3개월)

직업능력 개발지원

●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

- 지원대상 :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*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 훈련비용 지원

*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

- 지원수준 :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훈련비용 단가의 범위내에서 실 훈련비의 50~80% 지원
- 지원규모 : 연간 1인당 100만원(5년간 300만원)

● 내일배움카드

- 지원대상 : 구직등록 한 실업자(폐업한 자영업자) 또는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자영업자가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을 지원

- 지원규모 : 연간 1인당 200만원

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(시범사업)

●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정리 절차와 업종변경 등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 지원

- 폐업정리절차에 대한 컨설팅 : 폐업 시 세무관계 정산 및 신고사항, 폐업 시 절세방법 등
- 변화관리 및 취직 · 창업 컨설팅 : 대면상담, 취업교육, 창업컨설팅 등

신청방법

● 고용 · 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(<http://total.kcomwel.or.kr>)

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

※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

문의사항

● 고용보험 가입문의 : 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 (www.kcomwel.or.kr)

● 실업급여, 직업능력개발 등 문의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 (www.moel.go.kr)